

[별표 2] 지정대상 선정일 및 지정기준일(제12조제9항 및 제15조제7항 관련) <개정 2019. 4. 3., 2025. 5. 20.>

1.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

감사인 지정 사유	지정대상 선정일	지정대상 사업연도	지정기준일
가.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8호, 영 제14조제6항 제1호 및 제4호	회사 등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날	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	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6주가 지난 날
나. 법 제11조제1항제2호	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6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		
다. 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9호, 영 제14조제6항제2호 및 제6호	금융감독원장이 감사인 지정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한 날		
라. 그 밖의 경우	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	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	

비고

1. 법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영 제14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지정대상 선정일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 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.
2. 영 제14조제6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는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한다.

3.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감사인 지정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 지정 사유에 따라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른 지정대상 선정일 및 지정대상 사업연도를 적용한다.

4. 영 제1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 중 감사의견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적정 의견이 아닌 경우로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90조의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이 폐지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게 된 회사는 다목에 따른다.

## 2.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

가. 지정대상 선정일은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로 한다.

나. 지정기준일은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6주가 지난 날로 한다.

다. 지정대상 사업연도는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로 한다.

3.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선임요구 유예를 받고 있는 회사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감사인선임요구 유예를 취소하고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지정감사인선임요구를 하는 경우(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한다)

가. 지정대상 선정일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감사인선임요구 유예 취소를 의결한 날로 한다.

나. 지정기준일은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6주가 지난 날로 한다.

다. 지정대상 사업연도는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.  
다만, 지정대상 선정일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 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로 한다.